2005. 9. 14 ~ 9. 15
제 116회 임 시 회

시정질문 답변서

제 천 시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일 시	의원명	질 문 내 용	답 변 자	비 고
9. 14 (수) 10:00	이용섭	신백두학동 지역의 개발방안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과장	①
	김남원	새로운 농업정책 시행에 따른 우리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	②
	김진학	5도 2촌시대 개막에 즈음한 제천시의 농정대책과 관련하여?	시 장 농업축산과장 도시개발과장 건 설 과 장 수도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③ 서면답변 서면답변
		우리시의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대책은?	기획감사실장	④ 서면답변
	이재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시 장	⑤
	박종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2003년~2005년)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	⑥ 서면답변
9. 15 (목) 10:30	이동수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	①

답 변 서

□질의자 : 李 東 壽 議員 (자치행정위원회)

□답변자 : 산림녹지과장 오 성 창

□제 목 :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의요지

1.우리시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2.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면적과 피해내역은?

3.유해조수 구제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는 얼마나 예방하였는지?

4.향후 농작물피해 대책이 있다면 대책방안은?

5.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용의는?

□답변내용

평소 산림녹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유영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감사를 드리며 이동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유해조수에의한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지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지정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규정에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시 지역에는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도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역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수 있어 우리시에는 박달재 자연휴양림 주변10ha, 의림지주변 22ha, 탁사정주변 2ha등 모두 34ha의 면적에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시의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면적과 피해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면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동물입니다 특히 농작물과 과수에 피해를 주는 까치, 꿩, 멧비들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오리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의 피해면적은 금년9월6일 현재기준으로 밭 171ha, 논 11ha, 과수원 240ha 합계 422ha로서 주로 고추. 채소. 옥수수. 콩. 고구마. 수수등이며 특히 과수원에 많은 피해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인 유해조수 구제단을 운영하여 농작물피해는 얼마나 예방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총면적의 73.4%인 64,793ha가 임야로서 야생동물이 서식하기가 매우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방대한 면적의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6월28일 엽총을 소지하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28명을 구성하여 유해조수 구제단 발대식을 갖고 7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제실적으로는총422ha

의 면적에 4,952마리(까치2,749, 비둘기류1,766, 오리류50, 고라니310, 멧돼지3, 청설모74)를 포획하여 농작물피해를 예방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농작물 피해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총기에의한 유해조수 포획허가,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운영, 폭음기 사용, 울타리 시설등을 추진하여 피해예방을 하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활동외에도 야간구제활동 확대운영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자율구제단의 확대 운영,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2006년도 순환수렵장 운영건의등 포획활동을 강화하므로서 서식 밀도를 조정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유해조수에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유해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금년 2월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야생동물로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부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환경부에서 농작물 피해보상의 기준, 방법등 세부적인 사항을 2006년 3월경에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환경부에서 보상 기준안이 마련되는 데로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농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생동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등의 적극적인 보호정책에 힘입어 서식환경이 좋아지고 그에따른 개체수의 증가로 농업인들이 피땀흘려 가꾸어놓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합법적인 야생동물의 포획활동과 적절한 보호활동을 병행전개하여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의원님이 질의하신 유해조수에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